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학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생 건강검사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의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55호)됨에 따라, 연계를 위하여 수집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범위 규정

- 1)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 활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
- 2) 건강검진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학생의 검진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학교에 관한 자료, 외국인 등록 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처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5. 26. ~ 7.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장은”을 “장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은”으로, “따른 건강검사”를 “따라 건강검사”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다음 각호에 따른 정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강검사 대상 학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속 학교에 관한 자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부 칙

이 영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 장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 따라 건강검사----- ----- 다음 각호에 따른 정보----- ----- ----- ----- --.
<신 설>	1. 건강검사 대상 학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 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소속 학교에 관한 자료
<신 설>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정보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정보)
<신 설>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540